

[第9號書式]

歸屬企業體賣買契約書

財産의 表示

大韓民國政府管財廳長(以下甲이라稱함)과

郡 區 里
道 面 街 番地
市 市 色 洞

居住 (以下乙이라稱함)間에前記表示歸屬財産을左의條項에依하여賣買契約을締結한다.

第1條 甲은前記表示財産을乙에게一金 圓也로써賣却하며乙은이代金을左記方法에依하여無違支拂하기로한다
記

第2條 乙이買收代金을分納할境遇에當該分納金을指定期日까지納付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滯代金の1割에該當하는金額의過怠金を甲에게納付한다
甲은前項의過怠金を既納金中에서充當하고不足할境遇에는이를乙에게追徵할수있다

第3條 乙은何時든지指定期日前이라도未納金の一部또는全部를納付할수있다

第4條 乙은甲의要求에依하여何時든지賣却代金全額을完納하기前에는甲이指定하는火災保險會社에甲을當該保險金受取人으로하여그未納金以上에該當하는火災保險을附하기로한다

第5條 乙은本契約締結日以後本契約의財産에賦課된一切의税金其他公課金を負擔한다

前項의負擔金を乙이納付하지아니하는境遇에는甲은이를代納한後次期에納付할分納金에이를加算할수있다

甲은乙이負擔한第1項의負擔金を本契約解除時에는이를乙에返還한다

第6條 乙은本契約의財産의所有權이乙에게移轉될때까지는그財産을歸屬財産處理法및이에依하여發한命令, 指示에依하여善良한管理者의義務를履行하여야하며自費로保存上必要的修理를하기로한다

第7條 甲은本契約에依하여乙에게賣渡한財産에對하여何等의瑕疵擔保의責任을지아니한다

第8條 乙은本契約의財産의所有權이乙에게移轉되기前에는甲의事前承認없이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를하지아니하기로한다

1. 本契約財産의原形또는使用目的變更
2. 本契約財産의賃貸, 賣渡또는讓渡
3. 本契約財産에抵當權其他制限物權의設定

第9條 乙은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行爲가있거나事實이발견될때에는本契約을解除할수있다

1. 賣却代金또는그分納金を指定期日內에納付하지아니하거나負擔金を納付하지아니할때
2. 第8條의規定에違反되는行爲가있을때
3. 乙에關하여左의各號의1에該當하는事實이發見된때
 - 가. 禁治産者또는準禁治産者
 - 나. 破産宣告를받고復權이되지못한者
 - 다. 禁錮以上の刑을받고執行中또는執行猶豫中에있는者
 - 라. 公民權을剝奪당한者
 - 마. 乙및그家族中歸屬財産의管理運營에關하여故意破壞, 故意毀損, 虛偽報告, 無許可轉貸또는權利金을받고權利를讓渡하거나歸屬財産에損害를주었거나歸屬財産管理運營에顯著的支障을주는等事由로因하여權限있는官廳의判定또는處分其他에依하여其事實이證明된者
 - 바. 乙및그家族中에歸屬財産의買收, 賃借또는管理에關하여歸屬財産處理法및이에依하여發한命令의規定에抵觸됨으로써買收契約, 賃借契約또는管理契約의解除또는取消를當한者
 - 사. 乙의家族에屬하는者中어느一員이歸屬住宅또는垡地以外の不動産을買收한事實
 - 아. 其他法令에依하여禁止된事項에違反됨으로써歸屬財産의買收, 賃借또는管理에關하여缺格條件에該當한者
4. 其他乙이本契約各條項을不履行하거나또는이에違反할때

第10條 前條의規定에依하여甲이本契約을解除할때에는甲의要求에依하여乙은卽時로그財産을甲에게返還하여야 한다

前項의境遇에있어서乙에歸責될事由로因하여財産에被害를주었을境遇에는乙은卽時로當該財産의原狀復舊를하여야하며原狀復舊가不可能한部分에對하여서는그代償를甲이定하는바에依하여甲에게賠償하기로한다

第11條 第9條의規定에依하여甲의本契約을解除할境遇에는左와如히處理한다

1. 第9條第1號, 第2號또는第4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 (1) 既納된保證金과賣却代金의全部또는一部를乙에게返還한다
 -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對한全部또는一部를補償한다

(3) 乙이그財産의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甲에게納付시킨다

2. 第9條第3號의規定에該當하였을때에는

(1) 既納된保證金과賣却代金の全部또는一部를返還하지아니한다

(2) 그財産의價値를增加시키기爲하여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支出한費用에對한全部또는一部를補償하지아니한다

(3) 乙이그財産의管理期間中取得한利益과賃貸料에該當한金額을甲에게納付시킨다

第12條 乙이轉業, 移住其他로因하여本契約을拋棄할境遇에는甲은第10條및前條第1號의規定에依하여處理한다

第13條 本契約財産上에擔保權附債務가設定되어있을때에는甲은그財産의所有權을移轉하기前에이를清算하기로한다

第14條 甲은乙이第1條에規定된賣却代金を完納하였을때에는何時든지乙의要求에依하여本契約의財産의所有權을乙에게移轉한다

第15條 甲은乙이本契約締結日로부터2年以內에賣却代金の5割以上또는4年以內에賣却代金の7割以上을納付하고納付殘額에相當한抵當權을設定한때에는乙의要求에依하여그財産의所有權을乙에게移轉한다

第16條 左에揭記하는各號를除外한本契約의企業體에對한第三者의債務其他의請求權에對하여서는乙이그債務를履行할義務가있다

1.

2.

3.

4.

第17條 本契約財産의所有權이第三者에게歸屬된事實이法的으로確定될境遇에는甲은本契約을解除한다

前項의境遇에甲은既納金全額과乙이甲의承認을얻어서修理等を爲하여支出한費用을限度로이를乙에게返還한다

第18條 第9條第3號또는前條第1項의規定에依하여甲이一方的으로本契約을解除하는以外の境遇에있어서의本契約이解除또는改正은甲, 乙兩當事者が正式으로署名捺印한書面に依하여行하기로한다

第19條 本契約各條項의解釋에關하여疑義가있을때에는甲이決定하는바에依한다

第20條 本契約에關한訴訟은甲의住所地를管轄하는地方法院으로한다

以上各條項에依하여本契約이締結되었음을證明하기爲하여本契約書2通을作成하여甲, 乙兩當事者は署名捺印한後各自1通을保管한다

西紀 年 月 日

右賣却人(甲)
大韓民國政府
右買收人(乙)
住所
姓名
副署

印

印

印